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4. 11 선고 2022나21432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4. 11 선고 2022나214324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8. 11 선고 2021가단466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3. 3. 14.

판결선고 2023. 4. 1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8. 11. 선고 2021가단4669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취소. 제1심 판결문 별지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. 3. 15. 접수 제28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.

이 유

갑15(유동성 거래내역조회)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및 채무정산을 위임받은 C에게 2021. 5. 12.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.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